

오산8	익산시 목천동, 오산면 목천리 일원	176	937,434.0	165	937,862.7	금176,627,860원
군산1-1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운회리 일원	103	377,393.0	98	377,923.5	금191,542,940원
군산2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운회리, 발산리 일원	171	756,357.0	158	757,077.9	금125,980,960원
지경3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학당리, 증석리 일원	184	1,628,764.0	170	1,624,363.0	금425,844,930원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승용 1종,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1종) : 르노삼성자동차 ZOE

※ 전기화물(2종) : 셰미시스코 D2C, D2P

※ 전기버스(1종) :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2.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호

나.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다.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5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 8. (생략) 9. 셰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u>ZOE</u> 전기자동차 3. ~ 8. (생략) 9. 셰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u>D2C, D2P 전기트릭</u>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u>카운티일렉트릭(128kWh)</u>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u>카운티일렉트릭(64Kkwh, 128kWh)</u>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등

제4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입주기업 선정 및 절차 등

제11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선정방식 및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 유망 제조·물류기업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 공장(재건축 포함) 준공일을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입주의향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미입대 토지 또는 공장 면적이 각각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3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외 지원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입지·회계·산업기술·지역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풀(Pool)에 속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유치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고 운영한다.